

제 623 호

1977.9.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720 호: 서울특별시립문화회관사무분장규칙 3 ✓

◎ 고 시

제 323 호: 동청사 위치 변경고시 4

제 324 호: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 지적승인 5

제 325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고시 5

제 3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6

제 327 호: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실시계획인가... 7

제 328 호: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 고시 7

제 32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승인 9

제 3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1

제 33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3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118

계	보도재정	공보재정	문화재정	문화일반	공립
지	부	부	부	부	일

제 33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16
-------------------------------------	----

㉠ 공 고

제 212 호 :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공고.....	16
------------------------------	----

제 213 호 : KS 표시 금지처분 공고.....	16
------------------------------	----

제 214 호 : 서울특별시 철기 가구공업협동조합 설립 공고.....	17
---	----

제 217 호 : 공인신조사용 승인 공고	17
------------------------------	----

제 219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7
--	----

제 41 호 (종로구공고) : 공인신조 및 폐인 공고	18
---------------------------------------	----

제 1 호 (지하철본부공고) : 공인신조공고	21
----------------------------------	----

㉡ 예 규

제 364 호 : 서울특별시 약국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개정	29
--	----

㉢ 사 령.....	31
------------	----

규	칙
---	---

서울특별시립문화회관 사무분장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9월 1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20 호

서울특별시립문화회관사무분장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립 문화회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무과) ①서무과에 서무계, 경
리계와, 관리계를 두고, 서무계장과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
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②서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 무 계

가. 보안관리

나. 관인관수

다.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라.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예산

마. 인사 및 복무

바. 직장민방위대운영 및 예비군
업무

사. 입장권의 수표 및 검표

아. 다른과, 담당관 및 과내 다른
계의 구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 리 계

가. 구매, 용역, 공사, 내환등의
계약

나. 자금의 출납 및 결산

다.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라. 세입사무

마. 용 도

바. 입장권의 발급, 검인 및 매표

3. 관 리 계

가. 청사관리 및 영선

나. 건축계획 및 부속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비품 및 물품관리

라. 외자에 관한 사항

마. 불용품 관리

제 3 조 (기술과) ①기술과에 전기계와

기계계를 두고, 전기계장은 지방
전기기사로, 기계계장은 지방기계기
사로 보한다.

②기술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 기 제

가. 조명 (무대조명 및 일반조명).

음향, 통신, 방송, 동력설비, 중앙
삼시안 (전기설비부분) 및 계량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독
과 유지관리

나. 방재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
다. 국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계제

가. 전기설비를 제외한 무대기계,
급배수, 위생, 공조설비 (냉, 난방
포함) 소화 기타 기계설비의 설
계, 시공 및 감독과 유지관리

제 4 조 (무대 공연담당관) ① 무대 공연담당
관에 공연제와 무대제를 두고 제장
은 3급을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한다.

② 무대 공연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 연 제

가. 공연 및 대인계획

나. 공연장 대관

다. 공연물의 제작 및 관리

라. 국제회의 운영관리

마. 공연물선전 및 행사준비

바. 공연물품의 수급

사. 각본, 대본심사 및 공연신고
아. 담당관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무 대 제

가. 무대장착 및 부속실 (의상실,
분장실, 각색실, 도구실, 기타무대
와 관련된 부속실) 관리운영

나. 조명, 음향 및 영상설비 기타
종류 및 회의에 관련된 부속실
의 관리운영

다. 무대기계 운영

라. 와이프울간 피아노 동시 번역
기계 관리운영

마. 기타 무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조 (직무대행) 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시민화관 사
무분장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3 호

동청사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다 음				
동 명	위 치 변 경 내 용		이 전 일 자	
	이 전 전	이 전 후		
마포구 합정동	마포구망원동 338-61	마포구합정동 374-1	77. 9. 1	
관악구 대방동	영등포구신길동 869	관악구대방동 396-11	"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삼성동 157-59	강남구청담동 127-3	"	
천호출장소 성내동	강남구풍납동 165-2	강남구성내동 5-4	"	
1977. 9.				
서울특별시강 구 자 준				
◎서울특별시고시제 324 호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승인		이를 고시한다.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수도)을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		게 보인다.		
(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1977. 9. 7		
가. 수도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서울특별시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수 도	성동구 성수동 1가 642-1 일대	191,500 ㎡	특도수원지
"	"	용산구 한남동산 10-33 일대	87,783 ㎡	보광동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25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및 서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와 그 보호구		
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 조례제 6조.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1977. 9. 5		
		서울특별시강		

(지 정 목 록)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수 량	소 재 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 소	보 호 구 역
일반민속자료	24	계기동 정규엽가	1 과	동대문구 계기동 224	정규엽	과 동	계기동 224일원 (719 평)
"	25	장위동 김진홍가	1 과	성북구 장위동 76-59	김진홍	"	장위동 76-59 일원 (759 평)
"	26	우암송시열 초구 1명	1 착	종로구 익선동 166-77	정해동	"	
기념물 문화재	34	도선사 석 불	1 구	도봉구 우이동 264	도선사 주 지 이해성	"	석불하부기석 으로부터 15미 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3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75 호 (77.8.9.)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9. 9

서울특별시장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로선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 일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점	대로	3	25"	4,800"	대방동	서울대앞 광장	로선축소
변경	"	3	25"	1,920"	"	신림동 89번지	
선설	중로	3	12"	3,000"	신림교	서울대앞 광장	
"	"	3	12"	3,000"	"	"	

별첨 : 도면표시와 감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27 호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225 호 (77.7.13)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업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국
도시가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9. 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203-9 외 21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가스공급 설비

다. 사업의 규모 : 25,244.64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공 : 77. 9. 1

2) 준공 : 77. 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토지조서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인 주소, 상명 : 별첨

토지조서.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328 호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고시

도로교통법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통행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 9. 6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 (통행제한) 화물자동차 및 특
수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차종별, 일
별, 시간별,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한 내용

차	종	제한 시간	통행 제한 지역	비 고
3.5 톤 이상 화물 자동차		07:00-22:00	도심권 및 부도심권외 통행을 제한한다.	
1.5 톤 이상 3.5 톤미만 화물자동차		07:00-10:00 17:00-20:00	상 등	

나. 제한지역의 도심권 및 부도심
권은 다음과 같다.

(1) 도심권

(가) 시청중심 반경 5 km내외
교통압력에 가중되는 반경
7 km내외 다음도로

제 1 한강교북단 - 강변 4로 - 서
울대교북단 - 강변 4로 - 제 2 한
강교북단 - 서교동 - 동교동 - 연
희입체교차로 - 홍은동로타리 -
새검점 3 거리 - 북악터널 - 정농
입구 3 거리 - 길음교 - 미아 3 거
리 - 월암교 - 중암동 - 홍농입구
3 거리 - 과학기술연구소앞 - 휘
경로타리 - 시조사앞 3 거리 -

산업대입구 - 건농로타리 - 신답로타
리 - 사근동 - 경찰병원입구 4 거리 -
성동서앞 - 한양대앞 - 성동교 - 성농
교연결 강변 2로 (용비교) - 제 3
한강교북단 - 잠수교북단 - 강변 3로
제 1 한강교북단연결 지점간

(나) 제 1 한강교 통행제한

제 1 한강교는 1.5 톤이상 전화물
차량에 대하여 24 시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한다.

(다) 강변 2, 3, 4로 및 제 2 한강교

- 서교동 - 동교동 - 연희입체교차로 -
홍연교 - 홍은로타리 - 북악터널 - 정
농 - 미아 3 거리간 도로는 07:00-
10:00, 17:00-20:00에 한하

여 통행을 제한한다. (2) 부도심권 영등포구중 도시기능의 집중 지역인 다음 도로 (가) 문래동로타리 - 구구청 로타리간 (나) 역전 - 시장로타리 - 신화의원 앞로타리간 (다) 구구청로타리 - 시장로타리 - 남도극장앞 (철길) 간 (라) 구구청로타리 - 원호처입구간 (바) 구구청로타리 - 오비 - 우신국 교앞간 (버) 구구청로타리 - 신길 - 대방로 타리 - 제1한강교 남단 2. (예외규정) 통행제한 제한일자 및 차량은 다음과 같다. 가. 긴급 자동차 나. 제한구역내 통행허가증을 소지한 차량 다. 장대차량 제외한 10톤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요일에	한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정기노선 화물차량) 정기노선 화물차량은 도심권 및 부도심권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7.10.1 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151호 (76.6.29)는 이를 폐지한다. ③ 서울특별시고시제 32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82 호 (76.10.29)로 시설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170 호 (77.7.21)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 지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사업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0)에 관한 위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학교) 시행 허가승인 하였기
---	--

이를 공고한다.

2. 서울시 고시제 170 호 (77.7.21)
의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 지
정공고는 본 고시로 대체한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9. 12

서울특별시장

가. 시행허가 내용

- 1) 사업시행지 : 성동구 자양동
506의 12 필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국민학교

신설 (가칭 : 북도국민학교)

- 3) 사업규모및면적 : 14,520 (4,400평)
-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1년
- 6) 수용되는 수용할 토지또는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2.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성 동 구	504	전	272평	
자 양 동	505 - 20	대	2평	
	- 19	도	3평	
	506 - 1	전	911평	
	507 - 30	전	609평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성동구 자양동	- 29	전	97 평	
	553-468	"	421 평	
	-469	"	310 평	
	-27	"	450 평	
	-473	"	4 평	
	-471	"	638 평	
	554	전	41 평	
계	12 필		3,758 평	

◎ 서울특별시고시 제 33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7 호 (1976. 8.2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1977. 3. 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9.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 마포구 창천동 5의 2 ~ 창천동 5의 92 간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 9.5 - 1977. 12.31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로개설 (서강 아파트 ~ 봉원천간도로개설공사)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 재지 : 별첨
3. 사업규모 : 폭 = 15 m 연장 = 324 m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	

토 지 조 서

순위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구 창천동 145-5	제	2	마포구 창천동 324	유 지 승
2	" 145-4	"	1	"	"
3	" 13-14	대	33	영등포구 노량진동 225-90	서 용 찬
4	" 13-1	"	69	종로구 명륜동 1 가 36-44	김 용 구
5	" 8-3	"	53	마포구 창천동 3 - 4	이 종 대
6	" 8-7	"	13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	정 준 삼
7	" 8-6	"	48	" 동소문동 1 가 183	김 회 자
8	" 7-6	"	7	마포구 창천동 1 - 1	외 1 인 박 인 태
9	마포구 신수동 65-1	"	53	화성군 미도면 석교산 3 - 3	미도학원
10	" 65-2	"	196	"	"
11	" 65-3	"	73	"	"
12	" 63-1	"	2	마포구 신수동 67-1	이영호
13	" 68-5	"	40	서대문구 홍은동 11-6	최주량
14	" 68-8	"	6	마포구 신수동 67-1	이영호

순위	위 치	지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5	마포구 신수동 68-3	대	1	마포구신수동 67-1	이영호
16	" 68-19	"	6	"	"
17	" 103-1	전	3	충수시충수동 37	이현홍
18	마포구구수동 56-2	"	6	종로구 돈암동산 48-27	이정숙 외 2
19	" 66-7	대	43	마포구신수동 66-1	한정길 외 4
20	" 66-11	"	74	"	"
21	마포구 창전동 8-3	"	80	마포구동소문동 1가 183	박희자 외 1
계			819평		

건 물 조 서

번호	위 치	구 조	전 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구 창전동 13-14	연와조평옥개	1층 4 1층 3 지하 3	창전동 13-14	서은찬
		새멘벽돌옥개	4	"	"
2	마포구 창전동 8-4	새멘벽돌새멘와즙	1	창전동 8-4	이중대
3	" 8-3	목조와즙	2.5	" 8-1	박희자
4	" 7-1	연와조새멘와즙	7	외정부가동동 336	권오수
계			47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78 호(1972.3.6)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1977.3.16)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개설 (봉원천 도로개수공사) 3. 사업규모 : 폭 = 20 m 연장 = 880 m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9.12 ~ 19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	--

1977.9.12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의 위치 : 마포구 창전동 16의2 ~ 창전동 150의2

토 지 조 서

번호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창전동 2-108	대	17	창 전 동 2-108	이 봉 기
2	" 2-135	"	21	" 2-24	정 호 희
3	" 2-134	"	51	노 고 산 동 57-49	권 혁 입
4	" 2-123	"	3	북 아 현 동 105	임 승 임
5	" 2-133	"	5	창 전 동 2-23	정 영 표
6	" 2-132	건	25	" 2-133	신 상 식
7	" 2-56	"	22	" 40-10	고 재 립
8	" 2-131	대	7	" 2-114	서 수 자
9	" 2-130	"	0.9	" 2-95	권 규 원
10	" 2-129	"	4	" 2-5	장 원 모
11	" 2-128	"	0.9	연 회 동 30-4	박 하 영
12	" 2-101	건	6	창 전 동 2-5	장 원 모
13	" 2-127	대	4	" 2-21	구 병 립

번호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4	창전동 2-55	도	21	창 전 동 2-21	구 병 립
15	" 2-100	전	4	창 전 동 산 1-4	김 형 순
16	" 2-54	"	761	"	김해김씨중정중중
17	" 3-5	대	225	금호동 4 가 1134	박 영 규
18	" 3-8	"	123	"	"
19	" 5-10	"	299	충정로 3 가 31-7	정 정 금
20	" 5-128	전	295	창 전 동 28-1	임 정 옥
계			1894.8		

건 물 조 서

번호	위 치	구 조	전 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창전동 2-108	연와조세멘와즙	1층 10	창 전 동 2-108	이 봉 회
2	" 2-104	"	19.88	" 2-104	정 보 회
3	" 2-123	연와조 평 옥개	1층 3 2층 3	" 2-123	전 봉 진
4	" 2-105	연와조세멘와즙	23.56	노고산동 57-49	권 혁 임
5	" 2-113	연와조 평 옥개	12	창 전 동 2-113	신 상 식
6	" 2-114	"	2	" 2-114	서 수 자
7	창전동 산 1-4	독조와즙	17	" 2-54	김 정 화
8	" 3-71	세멘스라브	1	" 3-71	김 영 옥
9	" 5-12	"	1	용산원효로 1가 86	장 영 석
계			93.44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마포구청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16호(77.3.16)의 권한가. 지적승인내역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소재지	소로	3	6m	58m	대흥동6번지	대흥동6번지	
시설	2	2	8m	28.5m	염리동36-249	4-3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2 호

하천골재채취에정지공고

서울특별시 1977년도 한강 하천골재채취에정지를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7. 9. .

서울특별시 장

1. 하천명 : 한 강
2. 지역 : 강서구개화동 1-1 번지 앞 하천 (가양지구)
3. 지역위치도 : 별첨도면과 같음
4. 위치도열람 : 관할 강서구청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9. 12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3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7. 9. .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 885
2. 허가일자 : 1973.12.26
3. 제조업체명 :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
4. 대표자 : 장 영 신
5. 소재지 : 영등포구구로동 501
6. 규격번호 : KSM 5317
7. 품명 : 조합 페인트담색 (3종)
8.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후 당시의 해제조치가 있을때까지
9. 표시정지사유 : KS기준미달
10. 기준미달 항목 : 안료조성

◎서울특별시 공고제 214호

서울특별시철기가구공업
협동조합설립공고

서울특별시철기가구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서울특별시단체감독관 제 1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7.9. .

서울특별시장

1. 설립목적

철기가구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
모하며 협농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합명칭

서울특별시철기가구공업협동조합

3. 대 표 자

주소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213-16

설명 : 오 계 인

4. 사 무 소

서울특별시중구전당동 114-1

5. 설립년월일 : 1977.7.26

◎서울특별시 공고제 217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관계과 분임책임세출의 현금출납
원인을 아래와 같이 사용 승인하
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7.9. .

서울특별시장

1. 신조사용승인날자 : 1977.9.12

2. 공인의 인명 :

관계과분임세출의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공고제 219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34호 (69.1.11)로
고시된 도시계획(하수도)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
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동산구청도목과에
비치하고 건설의 소유자와 이해관

제인에게 보이게 한다. 3.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77. 9. 12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1. 사업장의위치 : 한강로3가 16-91 한강로3가 16의 26 2. 사업의종류와 명칭 도시계획사업 (하수도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B=31.6 m 및 도시계획법 제29조3항에 의한 B지역경계 지점으로부터 인접지양안각 20 나. L=252 m (4차: 144 m 5차: 108 m) 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77.4.1-12.31 6. 사용또는수용할건물: 별첨표시개산 7.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 제3항의 관계인주소·성명
--	--

건 물 보 상 조 서

도면 번호	토 지			
	지 번	지 목	평 수	주 소 · 성 명
1	용산구한강로3가 16-53	대	101.7	용산구 한강로3가 16-9 세원산업주식회사
2	" 16-58	"	360.6	남대문로2가 130 한일은행 (주식회사)
3	" 16-14	"	144.3	용산구 용문동38외56 김 준 철
4	" 16-25	"	86.5	영등포구 본동 117 세원산업주식회사 안수환
5	" 16-27	"	193.3	용산구 산천동 7외3 남 학 렬 외2인
6	" 16-24	"	83.7	용산구 효창동 5외7 강 명 환
계			970.1 ^평	

도면 번호	전		물		
	지	번	구	조	종평수
1	용산구	한강로3가16-53	철근콘크리트 세멘트블록스라브	144.94	중구남대문로2가 130 한일은행수석회사 지배인 김재철
2	"	16-58	세멘트블록조 스래트	50.81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주)한일은행대표이현직
3	"	16-14	세멘트블록조 스라브	104.54	용산구 용문동 38-156 김순철
4	"	16-25	부력단층	21.4	영등포구 본동 117 안수환 (무허가)
5	"	16-27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0.98	성동구 신당동 422외2 이동면
6	"	16-24	가건물	34.6	용산구 효창동 5외7 강영환 (무허가)
계				417.27	

○종로구 공고제 41 호

공인신조 및 폐인 공고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신설된 동의
동장직인 및 제인을 서울특별시공인
조례제 6 조에 의거 공인을 신조하고
폐동의 공인을 폐인하였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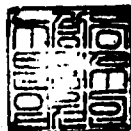
1977.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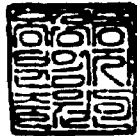
종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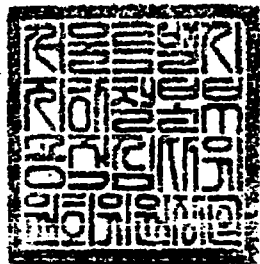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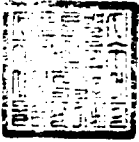
1. 사용계시 및 폐인년월일시
1977. 9. 1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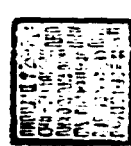
2. 공인신조 인영.

동명	장	인	제	인	전도자금출납원	도금경비출납원	관입수입금출납원
종로 1·2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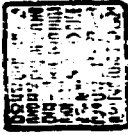
동명	장 인	제 인	신도자금출납원인	도급경비출납원인	분임수입원출납인
쫄로 4.5.6가동					
쫄로 1가동	폐 동 공 인 모 형				
	장 인	제 인	분임지출원인	분임수입원인	
쫄로 1가동					
쫄로 2가동					
쫄로 2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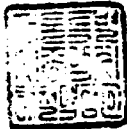
동명	장 인	제 인	분임지 출원	분임수입원
쫓로 4 가 동				
쫓로 5-6 가 동				
동 송 동				
◎ 지하철본부공고제 1 호 공 인 신 조 공 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하철본부및 현업기관의 공인을 신조하였기 동조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7. 9. . 지 하 철 본 부 장 1. 사불계 시년월일 : 77.9.7 2. 신조공인명 : 다 음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인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공적심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지하철 운수사업특별회계 관리과분임물품 출납원인	특별회계분임경리관 인	특별회계지출원인	본부일반회계분임 지출원인
			
특별회계물품 관리관인	특별회계물품 출납원인	특별회계경리과 분임물품출납원	특별회계유가증권 취급공무원
			
특별회계세입세 출과원출납원인	특별회계분임 징수관	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인	특별회계운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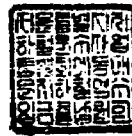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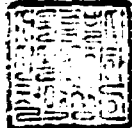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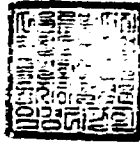
건설과분임물품 출납원인	전차과분임물품 출납원인	공무과분임물품 출납원인	전기과분임물품 출납원인
			
서울특별시하철 운전사령실사령장인	운전사령실분임 경리관인	운전사령실분임 지출원인	운전사령실분임 물품출납원인
			
전력사령실 사령장인	전력사령실 분임경리관인	전력사령실 분임물품출납원인	분임지출원
			
신호보안소 장인	신호보안소 분임경리관인	신호보안소 분임지출원인	신호보안소 분임물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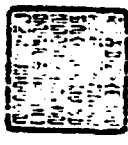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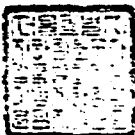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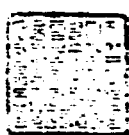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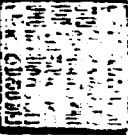
	장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차 량 공 작 소				
전 기 소				
공 무 소				
동 산 소				

승무관리소	장 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자재창고	장 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서울역알지하철역	장 인	분임징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시청 앞지하철 역	장 인	분임 징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 경리관인	분임 지출원인	분임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관 각 지 하 철 역			
	장 인	분임 징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관 각 지 하 철 역	분임 경리관인	분임 지출원인	분임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종로3가역지하철역	장 인	분임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종로5가지하철역	장 인	분임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종로5가지하철역	장 인	분임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동대문지나철역	인	분임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신설동지하철역	장인	분임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신설동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세계 동지 하 철 역 청 량 리	장 인	분임징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정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청량리역 장 인	분임징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분임정리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364 호 서울특별시약국및외약출판매업소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개정 서울특별시약국및외약출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약사법 제69 조및 보건사회부훈령제 242 호 (77.7 261)에 의하여 약국및외약출판매업 소의 약사및 마약법령의 위반등에 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함으로 그 저본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3항중 16호를 17호로 하고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호 마약법제 46조의2 및 제40 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한때 부 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신 구 조 문 대 조 표

원	개 정 (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 69 조 및 보건사회부훈령 제 159 호 (72.3.21) 에 의하여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약사법 법령위반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업무정지처분요건) ① - ②생략 ③ 1 - 15 생략 ④ 17 신설 ⑤ 16 호를 삭제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 69 조 및 보건사회부훈령 제 242 호 (77.7.26) 에 의하여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약사법 및 마약법령의 위반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함으로서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업무정지처분요건) ① - 2 과동 ② 1 - 15 과동 ③ 16 마약법 제 46 조의 2 및 제 46 조의 3 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 16 호를 17 호로

사 령

◎ 1977.9.2

통제담당관 지방행정 서기 안병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7.9.7

허 선
지방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병함.

김인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운수국 교통 기획담당관 직무
대리를 명함.

◎ 1977.9.8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김윤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7.9.9

주택관리과 서기관 신태신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2.5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7.9.12

주택관리과 지방행정 서기 신정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서기 공창수
제 2 무임소장관실 파견근무를
병함.

(1977.9.15 ~ 78.3.14)

영등포구 서기관 이상정
시민국장
주택관리과 과장에 보함

영등포구 서기관 김병서
민방위국장
영등포구 시민국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서기 김관옥
사무관
영등포구 민방위국장 직무
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